

도봉효사랑데이케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및 기간) 서비스의 이용은 수급자와 기관간 계약체결에 의해 실시된다.

①**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수급자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사망, 이사, 요양원 입소, 가족수발, 서비스 불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갱신시에는 수급자와 기관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계약조건은 이전 계약을 승계한다.

③**계약서 작성**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동의서,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④수급자와 기관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계약 체결시 필요사항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3) 건강진단서 1부 (검진일 1개월 이내)

제10조(월이용료의 부담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거하여 청구되며 수급자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세부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한다.

②본인이 부담하는 월 이용료의 납부는 익월 15일까지로 하되 기관은 익월 10일까지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비급여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한다

>식재료비 : 1식당 : 3,700원 > 간식비 :1일 : 1,000원

④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야간보호의 경우 주 6일 08:00~20:00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한 활동여건 속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점검, 인수인계등의 자료제공의 의무를 다한다.

③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다한다.

⑤인적사항 변경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관련 변경사항이 발생시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⑥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알린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계약의 해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1.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휴폐업 등)가 발생하면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 기관은 이를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이전, 시설 입소 등)가 발생하면 해제가 가능하며 수급자는 이를 기관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나타날 때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정지 할 수 있다.

⑤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단절되거나 고의적으로 연체를 할 때 정지 할 수 있다.